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31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유용원·조 국·인요한

안철수 · 백종헌 · 조승환

한기호 • 강선영 • 임종득

서범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 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자 중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서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 시도를 방지하려는 것

임(안 제71조 등).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43세부터 면제되며,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제72조제1항 중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의무는 45세까지로 한다.

②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 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제76조제5항 본문 중 "40세"를 "45세"로 한다.

제8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45세"를 각각 "47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영의무가 감면되거나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 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 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 <u>다만, 제1호·제6호·제</u>9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 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43세부터 면 부터 면제된다. 제되며,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 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제1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 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 ----한다. 다만, 제71조 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제1항제1호・제6호・제9호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 는 해까지로 한다. <단서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 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 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 다.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 저 한 제재) ① ~ ④ (생 략)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 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 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 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 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 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 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병역의무는 45세 까지로 한다.

	2	예	비현	별 •	보충	·역	의	장교	<u>.</u>	<u>준</u>
	<u>사</u>	간	및	부/	사관	실	병	역의	무	는
	ī	구o]사	법」	에	따.	른	ユ	계	급
	의	Ć.	렁 /	정년	0]	되는	<u>-</u>	해끼	-지	<u>로</u>
	한I	<u> </u>								
	<u>③</u>	<u>제</u>	1항	및	제	<u>2항</u>				
					_					
4	762	조(병역	l의 ^프	-	불ㅇ] 행	자여		대
\ \ \		,					, ,	자이 현행 ³		•
H		,					, ,	,		•
<u>भ</u> ो	한	제					, ,	,		•
।	한 음)	제					, ,	,		•
레	한 음)	제					, ,	,		•
भी	한 음)	제					, ,	,		•
भी	한 음)	제					, ,	,		•
भी भी	한 음)	제					(&	,	· 라 	괕
सी ब	한 음)	제					(&	년 행 3	· 라 	괕

다. 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 제83조(전시특례) ① -----은 전시 · 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 • 9. ----예비역 · 보충역의 병, 전시근 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 간을 45세까지로 연장 ----47세-----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 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 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 -----47세 -----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